

회의록

회의 일시	2019. 10. 4(금)	부 서	기획처	장 소	본관 대회의실
참 석 자	○ 위원장 : 류동희 ○ 위 원 : 류대현, 조재혁, 김정일, 황병삼, 양현호	회의 구분	부서주관회의		

회의 명	제47차 대학평의원회의
의 안	제1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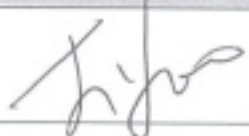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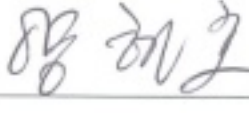
회의내용 및 합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위원장이 기도 후 개회를 선언함.</p> <p>안건. 제1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p> <p>○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법인의 개방이사 현황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 후보자의 2배수를 추천해야 함을 설명함. 이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을 위해 우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인 문재우 위원의 결원(연구년)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 1명의 추천할 것을 요청함.</p> <p>양현호 위원과 참석위원의 제청으로 김정일, 황병삼 위원이 추천되었으며 위원들의 투표 결과 황병삼 위원 4표, 김정일 위원 1표, 기권 1표로 황병삼 위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함.</p> <p><input type="checkbox"/> 위원장의 폐회 선언과 주기도문으로 회의를 마침.</p> <p>붙임 1. 위원 서명지 1부. 2. 회의 안건 1부. 끝.</p>
-------------------	-----------------------------------------------------------------------------------------------------------------------------------------------------------------------------------------------------------------------------------------------------------------------------------------------------------------------------------------------------------------------------------------------------------------------------------------------------------------------------------------------



(앞장에서 이어짐)

위와 같이 제47차 대학평의원회의를 실시하고 확인함

2019년 10월 4일(금)

구 분	신 분	성 명	확 인 서 명
위 원 장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류 동 회	
위 원	교 원	류 대 현	
		조 재 혁	
		김 정 일	
	직 원	황 병 삼	
		김 만 길	
	학 생	유 경 윤	
	동 문	양 현 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박 종 도	
		오 관 영	
		윤 영 춘	

끝.

제47차 대학평의원회의

일 시 : 2019. 10. 4(금) 12:00

장 소 : 본관 대회의실

안 건 : 제1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기획처 비전혁신팀



[안건] 제12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 관련 근거 : 법인사무국-2019-73 (2019.09.18)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인 문재우 교수의 결원(연구년)으로 인한 위원 1명 추천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양 현 호	동 문
위 원	류 동 희	외부인사
위 원	문 재 우	교원(연구년)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호선

□ 관련 규정

법인
정관

제20조의3(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에 두며,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3인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
평의
회
규정

제13조(임원) ①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관련규정

법인
정관

제20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대학
평의
원회
규정

제12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5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2.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②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14조(회의)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개방이사 및 감사 자격요건) 개방이사 및 감사의 자격요건은 법인 정관 제20조 제1항에 의한다.

제16조(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절차) ① 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는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를 추천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서 접수
2. 추천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3.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대상자 추천 및 회의개최 결과에 따른 추천대상자 결정
4. 이사장에 추천대상자 통보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